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제정	2018.10.22.	개정	2023.09.25.
개정	2019.09.30.	개정	2024.10.07.
개정	2020.11.02.	개정	2025.03.31.
개정	2021.09.27.	개정	2025.12.01.
개정	2022.02.28.	개정	2026.06.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교육과정)에 따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품질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표, 비전, 사명을 근간으로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②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각 호의 체계를 활용하여 편성한다.

1. NCS 체계(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
2. CK-CEF 체계(ChungKang-Certificate Framework, 청강역량인증체계)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3년 주기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유형은 개발, 개편, 유지로 구분한다.

④ 대학의 교육과정은 스쿨(전공) 및 학과의 교육목표, 교육방침, 교육수요자(학생, 교수자, 산업체)의 요구, 산업계 변화 동향과 수요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본 규정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스쿨(전공) 및 학과, 교양교육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전공 교육과정은 스쿨(전공) 및 학과,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원 주관으로 개발한다.

③ 모집단위(편제정원)가 없고,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편성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 및 일반교과로 구분하며, 각 교과의 세부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교양교과: 교양필수, 교양선택
2. 전공교과: 전공필수, 전공선택
3. 교직교과: 교직필수, 교직선택
4. 일반교과: 일반필수, 일반선택

제5조(용어정의) 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용어는 각 호와 같다.

구분	정의
핵심역량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에 근거한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기본적 능력을 말함
스쿨역량(=능력단위)	스쿨(전공)의 교육목표에 따라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함양하는 전문적인 능력 단위를 말함

스쿨역량하위요소	스쿨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세분화된 학습 기준으로, 각 요소는 3수준(Super-Average-Basic)으로 구성되며 교과목의 학습성과 판단 기준이 됨
교과목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스쿨역량 하위요소의 조합으로 편성된 개별 학습 단위를 말함
모듈	하나의 스쿨역량 또는 하위요소를 분석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묶은 학습 단위를 말함
로드맵	특정 학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과 모듈을 체계적으로 배열한 학습 경로를 말함

제6조(개발절차) 교육과정은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환경 분석
2. 교육목표 및 역량 도출
3. 역량 적합성 검증
4. 교과목 도출
5. 교수요목 작성
6. 교육과정 자문

제7조(편성원칙)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 일반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교육과정은 입학연도 기준으로 편성하며,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을 졸업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적변동자(복학, 전과, 유급 및 재입학자)는 학적변동 허가 학기부터 해당 스쿨(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③ 1학점 1시수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2 이상 편성할 수 있다.

④ 학기당 15학점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양 교육과정 및 학제의 마지막 학년학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편성함을 권장한다. 단, 특수사유(전공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국가고시, 전공 필수 자격증 취득, 모집정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실습과목 시수를 전체 교과목 시수 대비 50% 이상 편성한다. 단, 교양 교육과정과 특수사유(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모집정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2년제 전공의 경우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를 포함하여 78학점 이상을 편성하며, 3년제 전공의 경우 117학점 이상을 편성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매 학기 10학점 이상, 총 20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편성한다.

⑧ 현장실습 교과목은 2학점, 주당 40시수, 전공선택으로 편성한다.

⑨ 원격수업 교과목은 전공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양 교육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지전공의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⑩ 일반교과의 편성은 무경계전공제 혁신전공제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⑪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학점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년별 학점 구성은 전체 구성학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스쿨(전공) 및 학과의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복수전공: 36~42학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전부 편성하여야 한다.

2. 부전공: 21~27학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1과목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⑫ 소단위전공의 학점 및 과목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의 단계와 명칭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학위 과정 내에서 스쿨(전공) 및 학년 간 융합 개발은 가능하나, 서로 다른 학위 과정 간의 융합 개발은 불가하다.
1. 마이크로디그리: 전공 교육과정 내 또는 타전공 교육과정과 융합하여 12~15학점(4과목 이상)으로 구성하며, 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전용 교과목 수를 50% 이상 편성한다.
 2. 나노디그리: 전공 교육과정 내 또는 타전공 교육과정과 융합하여 6~9학점(2과목 이상)으로 구성하며, 타 나노디그리 과정과 교과목을 중복하여 편성할 수 없다.

제8조(교육과정 인증) ①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 인증제를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인증유형은 각 호와 같다.

구분	공통	복수전공/부전공
개발	- 편성절차를 거쳐 교육과정 신규로 운영 - 이전 개발인증 후 3년 경과시 - 교육목표, 인재양성유형, 스쿨역량 변경 - 개편 교과목수가 전체 교과목의 30% 초과	- 필수 교과목 추가, 삭제, 변경 - 교육목표 변경 - 구성 교과목 수의 50% 초과
개편	- 개편 교과목수가 전체 교과목의 30% 이하 (교육목표, 인재양성유형, 스쿨역량은 유지)	- 구성 교과목 수의 50% 이하
유지	- 전년도 교육과정을 차년도에 변경 없이 적용	

③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휴학생의 재수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9조(교육과정 인증 절차) ① 교육과정 인증 절차는 각 호와 같다.

단계	구분	내용				
1	교육과정 작성 및 제출	- 원장 및 학과장은 내외 환경분석과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안을 작성하여 스쿨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학사학위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				
2	교육과정 관리부서 검토 및 교육과정혁신위원회심의	- 제출된 교육과정(안)은 교육과정 관리부서의 검토 후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 진행 -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 시 위원별 인증평가표(별표1)를 작성하여 평가 제출. (교육과정 유지의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교육과정 관리부서에서 서면 점검) - 위원별 점수의 평균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심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음 <table><tr><th>다전공 미편성 교육과정 (전문학사/전공심화/모집정지 전공 대상)</th><th>다전공 편성 교육과정 (부전공/복수전공/소단위전공 편성 전공 대상)</th></tr><tr><td>80점 이상 (100점 만점)</td><td>130점을 100점으로 환산 후 80점 이상</td></tr></table>	다전공 미편성 교육과정 (전문학사/전공심화/모집정지 전공 대상)	다전공 편성 교육과정 (부전공/복수전공/소단위전공 편성 전공 대상)	80점 이상 (100점 만점)	130점을 100점으로 환산 후 80점 이상
다전공 미편성 교육과정 (전문학사/전공심화/모집정지 전공 대상)	다전공 편성 교육과정 (부전공/복수전공/소단위전공 편성 전공 대상)					
80점 이상 (100점 만점)	130점을 100점으로 환산 후 80점 이상					

		-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 미인증으로 처리하며,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재인증 시행
3	교무위원회 심의	-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안을 교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4	대학평의위원회 자문	-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안을 대학평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자문 구함
5	교육과정 확정	-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 교무위원회 심의, 대학평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교육과정안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② 교육과정 인증은 학기 운영 중에 불가함이 원칙이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모집정지된 스쿨의 교육과정은 개발 필요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인증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확정된 교육과정의 수정은 불가함이 원칙이나 수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 운영)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다음의 제반 절차를 따라 운영한다.

단계	구분	내용
1	수업운영 계획 및 확인	- 수업 개설 - 강의계획서 작성하여 대학정보시스템에 입력
2	수강신청 및 수업운영 준비	- 대학정보시스템을 통한 강의계획서 공람 및 수강신청 진행 - 수업운영을 위한 대학정보시스템 점검 및 지원
3	수업 운영	- 교과목별 수업 운영 - 학습 부진 학생 지원 - 효율적 수업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공
4	학생 역량평가	- 평가계획 기반으로 직무역량 수행 준거에 따라 평가 시행
5	교육과정 운영평가	- 운영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재학생, 졸업생, 교수자, 산업체 대상 평가(만족도 조사) 시행
6	교육과정 품질관리	- 교육과정 운영평가 결과기반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및 환류 계획 수립

제11조(교육품질관리) 교육품질관리는 교과목, 스쿨, 대학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위	항목	세부항목	내용
교과목	평가	학생 자체평가	중간·기말 강의평가를 통해 학습목표 달성도 및 요구사항 파악
		교수자 자체평가	매 학기 교과목별 학습목표 달성도, 교육환경 등 전문조사를 통해 수업 개선사항 도출

스쿨	평가	학생대상 교육과정 운영평가	재학생 대상 스쿨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 시행
		교육과정 운영평가	스쿨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평가 시행
	환류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강의평가, 교수자 자체평가, 만족도조사 등 각종 평가 결과 와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보고서 작성
대학	평가	교육수요자 대상 만족도조사	성과관리센터의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결과 활용
		교육과정 성과 평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역량성취도 등 성과지표 기반 평가 시행
	환류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스쿨 교육품질관리 보고서를 분석·종합하여 대학 차원의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제12조(유의사항) 이 규정과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대학 정책 또는 스쿨 및 학과의 교육적 특수성
으로 인해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⑥ (경과조치) 제9조(교육과정인증절차) ②항의 변경은 2022년 01월 27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 ⑦ (경과조치) 제8조(교육과정인증) ②항의 각 호의 변경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 ⑧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⑨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⑩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⑪ (경과조치) 제4조(구성)의 4, 제7조(편성원칙)의 ⑩항의 변경은 2024년 10월 0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 ⑫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편성원칙)의 ⑫항의 내용은 2024년 10월 0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 ⑬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인증평가표 서식

교육과정 개발인증 평가표

심사대상	스쿨	
	전공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8	7	6	5	4	
I. 전략수립	1. 스쿨(전공)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과 연계성을 갖고 설정되었는가?						
	2. 대내외 환경분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는가?						
	3.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는가?						
II. 교육과정 편성	4.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인재양성유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는가?						
	5. 인재양성유형에 도달하기에 적합하도록 스쿨의 역량 체계가 설계되었는가?						
	6. 역량 체계를 기반으로 교과목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었는가?						
	7. 교수요목에 교과목에 대한 기본정보와 학습목표가 정확하게 기술되었는가?						
	8. 교수요목 평가계획에 학습목표 달성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학습결과물과 평가방법이 연계성을 갖고 기술되었는가?						
	9. 인재양성유형별 로드맵은 학생의 학습설계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10. 교육과정의 운영(수업연한, 시수, 강의장 여건, 교과목 간의 연계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가?						
III. 구성원간의 의견 수렴	11. 스쿨(전공) 교수 전원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교수 전원의 합의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는가?	10	9	8	7	6	
	12. 교육수요자에게 교육과정 개발의 취지와 목표를 설명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IV. 다전공 편성(복수· 부전공, 소 단위전공 편	13. 다전공 교육목표가 명확히 설정되고, 편성된 교과목이 그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	10	9	8	7	6	
	14. 전공 필수 또는 전용 교과목이 포함되고, 학년별 학점 구성 기준에 따라 기초→심화→전문 순으로 체계						

성 전 공 해 당)	적으로 편성되었는가?						
	15. 타 스쿨 학생이 순차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선후 수 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가?						
총계							

평 가 의 건 (스쿨(전공) 교육과정의 우수한 점, 보완할 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평가자 : _____(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교육과정 개편인증 평가표

심사대상	스쿨	
	전공	

구분	평가문항	평 가 등 급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I. 전략수립	1. 개편 필요성에 대한 배경, 문제의식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가?						
	2. 교육과정 개발시점의 교육목표를 근간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는가?						
II. 교육과정 편성	3.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체계적인 분석 방법과 절차에 의해 개편되었는가?						
III. 구성원 간의 의견 수렴	4. 교육과정의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5. 스쿨 교수들의 합의과정을 통해 개편되었는가?						
IV. 다전공 편성(복수· 부전공, 소 단 위 전 공 편성 전공 해당)	6. 다전공 교육목표를 유지하면서 개편 필요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이 체계적으로 개편되었는가?	15	14	12	11	10	
	7. 개편 후에도 전공 필수 또는 전용 교과목 포함과 학년별 학점 구성 기준이 충족되는가?						
총계		점					
평 가 의 건 (스쿨(전공) 교육과정의 우수한 점, 보완할 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평가자 : _____(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